

#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클레임 제기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 안내문

ESA 라고 불리는 ‘고용기준법 2000(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은 온타리오 주 내의 직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ESA 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ESA 권리에 대해 묻거나 ESA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위협
- 해고
- 징직
- 감봉
- 기타 방법에 의한 처벌
-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내 권리를 찾는 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나?

여러분의 고용주가 ESA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노동부(Ministry of Labour)에 연락하십시오. 노조 소속 고용인은 노조 대표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노동부 직원은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여러분의 의문을 풀어주고, 여러분의 불만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여러분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저희와 면담하고 나서 클레임 제기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클레임 제기 절차 4 단계

### 1 단계: 고용주와 면담해보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고용기준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면담해보아야 합니다. 흔히 이 방법으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와 면담해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미 고용주와의 면담을 시도해보았을 경우
- 임금이 5 개월 이상 체불되었을 경우(체불임금 회수에는 시한이 있음 – 클레임 가이드 5 페이지 참조)
- 직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 고용주가 파산했거나 파산관재 상태에 있을 경우
- 고용주와 면담하기가 두려울 경우
-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경우

- 고용인이 현재 입주 보육자로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입주 보육자(live-in caregiver)로 일했을 경우
- 고용주가 사용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 고용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고용인이 장애로 인하여 고용주와 면담하기가 어려울 경우
- 온타리오 주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에 의거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중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지만 고용기준 문제에 관하여 고용주와 면담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클레임 양식(Claim Form) 상에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고용기준 안내센터 (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에 문의하십시오(416-326-7160 또는 1-800-531-5551).

노동부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볼 수 있는 워크시트와, 고용주와의 면담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시작하기 전에(Before You Start)’ 책자와 클레임 가이드에 들어 있습니다.

## 2 단계: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클레임 양식을 작성할 때 여러분의 고용 기록에 관한 중요한 서류와 고용주의 연락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노동부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레임 가이드에서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를 참조하십시오.

## 3 단계: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클레임 양식은 여러 가지 상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작성하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기초 정보에는 별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클레임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english/es/forms/claim.php](http://www.labour.gov.on.ca/english/es/forms/claim.php) 에서 지원 서비스 연락처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고용기준 안내센터(416-326-7160 또는 1-800-531-5551)에 문의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클레임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되면 여러분에게 클레임 번호를 통지한 후 여러분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 4 단계: 노동부에 클레임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개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클레임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www.labour.gov.on.ca/english/es/forms/claim.php](http://www.labour.gov.on.ca/english/es/forms/claim.php). 클레임 양식을 제출하는 즉시 클레임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팩스:** 1-888-252-4684

**직접 제출:**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ServiceOntario Centre), 1-800-267-8097

**우편:**

Provincial Claims Centre

Ministry of Labour  
70 Foster Drive, Suite 410  
Roberta Bondar Place  
Sault Ste. Marie, ON P6A 6VA

**주의:** 팩스,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노동부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클레임 번호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클레임 접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합니다.

클레임 접수 번호는 클레임 양식이 노동부에 접수 및 등록되는 즉시 발급됩니다. 모든 필수 정보가 제출되었음이 확인되면 클레임 번호가 발급되고 클레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클레임이 접수되면 노동부는 먼저 여러분과 고용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클레임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 클레임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클레임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 양식은 노동부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http://www.labour.gov.on.ca)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서비스 온타리오 출판국(ServiceOntario Publications)으로부터 우편으로 받거나,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에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 클레임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것은?

클레임 양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 위반된 최소한의 기준(예: 고용주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고용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 발생 일자
- 체불된 급여(확실할 경우 금액 표기)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고용주 관련 정보도 기입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고용주의 사업체가 아직 운영 중인지의 여부
- 고용주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클레임을 제기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접수된 클레임을 검토하고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노동부는 고용기준감독관(Employment Standards Officer)을 배정하여 클레임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표 사본
- T4 양식 사본
- 해고통지서 사본(고용주가 고용인을 해직/해고하고 서면으로 통지했을 경우)

- 고용기록(Record of Employment) 사본(받았을 경우)
- 고용계약서 사본(있을 경우)
- 경고장 사본(받았을 경우)
- 근무시간 기록(근무일 기록, 근무시간 기록, 출근 기록, 근무일지, 메모 등 - 있을 경우)

##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고용주가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고용기준감독관은 이 판정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여러분이 이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 일 안에 심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여러분의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고용기준감독관은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지급
- ESA 규정 준수
- 복직
- 보상

고용주는 ESA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고용주에게는 벌금형 및/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시한이 있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부는 클레임 접수일로부터 과거 6 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english/es/pubs/guide/esclaim.php](http://www.labour.gov.on.ca/english/es/pubs/guide/esclaim.php) 를 방문하십시오.

## 노동부에 연락하십시오

고용기준 안내센터로 연락하십시오(416-326-7160, 무료전화 1-800-531-5551, 청각장애인용 TTY 전화 1-866-567-8893).

노동부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http://www.labour.gov.on.ca)에서 '고용기준(Employment Standards)' 페이지를 방문하면 ESA 권리에 관한 상세 정보가 기재된 온라인 안내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최신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기재된 정보에 따라 행동을 취하기 전에 되도록 정보를 확인해보십시오.